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1. 강**
2. ***** 문카라
3. ***** 바부이
4. ***** 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902호(삼성동, 남경센터빌딩)

담당변호사 한정림, 김도현, 안수민

(전화: 02-501-6700, 팩스: 02-501-6712)

채 무 자

1.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종로구 종로14(서린동)
대표자 이인호
2.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대표자 은성수

피보전권리의 내용

환경에 기한 건강권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별지 1 기재행위를, 채무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별지 2 기재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목 차

1. 당사자의 지위.....	4
가. 채권자의 지위.....	4
나. 채무자의 지위.....	4
2.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문제점.....	6
가. SK E&S의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 진행.....	6
나. 채무자들의 금융제공 및 부당성.....	6
1) 채무자들의 공적자금 투입 의향.....	6
2)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부당성.....	7
다.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오염 관련 문제점.....	7
1) 가스전 개발 사업의 개요 및 SK E&S의 CCS 계획.....	7
2) 이 사건 사업의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	9
3) 호주 내 현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반발.....	11
라.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제도정책적 문제점.....	12
마.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재무적 부당성.....	13
1) 이 사건 사업의 불확실성 및 비경제성.....	13
2) 방론: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적 지원.....	15
바. 소결.....	15
3. 피보전권리의 존재.....	16
가. 환경권에 기한 건강권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16
1) 관련 법령.....	16
2) 이 사건의 경우.....	17
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19

다.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	19
1) 관련 법령	19
2) 이 사건의 경우.....	20
4. 보전의 필요성	20
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및 이 사건 사업의 불가역성(不可逆性).....	20
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특수성(사전예방적 조치의 효율성)	21
5. 결론.....	21

1. 당사자의 지위

가. 채권자의 지위

채권자1은 대한민국 국적의 납세자이자 청년으로, 청년기후단체인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소갑 제1호증의 1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채권자2 내지 4는 각 호주국의 국민으로서, 모두 호주 북부에 위치한 노던 준주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위 노던 준주는 후술하는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이 되는 호주국 바로사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예정지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2 내지 제1호증의 4 채권자들의 각 신분증 사본).

나. 채무자의 지위

- 1) 채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채무자1”이라 합니다)는 무역보험업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순자산 전부가 정부출연

금(약 1조 7,801억 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내기업 등의 무역 보험거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소갑 제2호중의 1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2호중의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2) 채무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채무자2”라 하며, 채무자1 및 채무자2를 함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¹⁾)으로서, 매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2019년 회계연도 기준 약 40조 6,713억 원)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입 관련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며, 정부가 그 지분 중 66.27%를, 한국산업은행이 23.87%를, 한국은행이 9.86%를 각 보유하고 있습니다(소갑 제3호중의 1 한국수출입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3호중의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3) 채무자들은 국내 에너지 기업인 신청외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이하 “SK E&S”라 합니다)가 호주 현지 석유가스 기업인 산토스(Santos), 일본의 전력기업(Jera)가 합작하여 호주 바로사(Barossa)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 가스전 개발 사업에 무역보험을 포함한 금융 제공 및 지원(이하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이라 합니다)을 할 예정에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¹ 본 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내에 공공기관 지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채무자2(이하에서 정의됨)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채무자1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각 지정되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2019. 1. 30.자 보도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참조). 위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문제점

가. SK E&S의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 진행

SK E&S는 2012. 6.경 미국 코노코필립스사(社), 호주 산토스사(社)로부터 호주 다윈 연안에서 300km 떨어진 바로사-칼디타(Barossa-Caldita) 가스전 중 바로사 가스전의 지분 37.5%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SK E&S는 매장량 평가, 인·허가 및 설계 작업 등 개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2021. 3.경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최종 투자 의사결정(FID)를 공표하였습니다.

SK E&S는 위 바로사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에 약 14억 달러(한화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1분기 경 LNG² 상업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K E&S는 2025년경부터 생산되는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도입물량 중 일부는 LNG 발전에, 일정 부분은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1 및 2 각 SK E&S의 보도자료).

나. 채무자들의 금융제공 및 부당성

1) 채무자들의 공적자금 투입 의향

SK E&S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뒤, 채무자1에 보증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1은 “SK E&S가 국제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소갑 제 5호증의 1 한겨레 뉴스기사). 또한 채무자2는 2021.3.26에 3억 달러(한화 3,500억

²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하고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원)의 참여의향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소갑 제5호증의 2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채무자2의 회신), 채무자1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보증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SK E&S가 국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이상, ‘국제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 사건 금융지원 등이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2)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부당성

그러나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은 (1) 환경오염 측면, (2) 제도정책적 측면, (3) 재무적 측면 모두 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후술하는 채권자들의 제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바, 이하에서 각 항을 바꾸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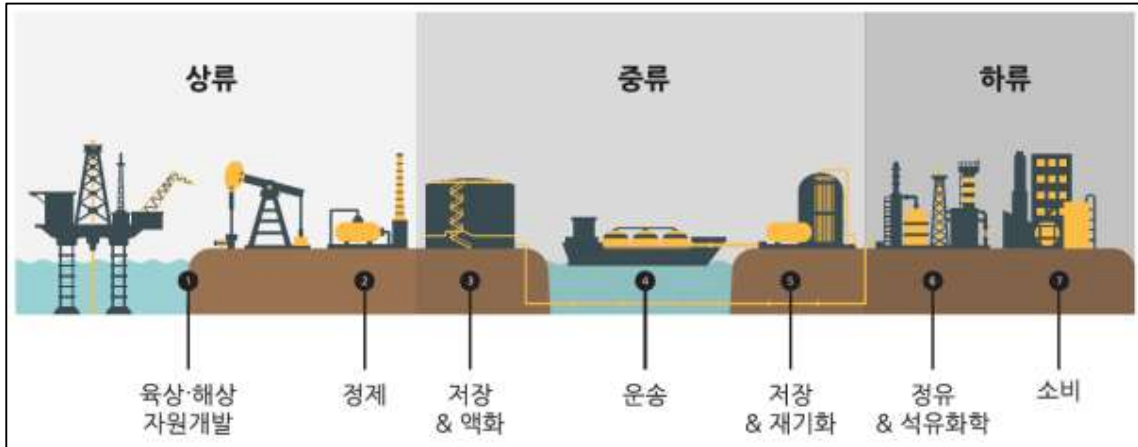
다.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오염 관련 문제점

1) 가스전 개발 사업의 개요 및 SK E&S의 CCS 계획

가스전 개발 사업은 가스의 채굴 및 처리 과정, 액화, 운송, 최종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인 메탄이 대기 중으로 새어나가는 ‘탈루’ 배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는 가스전 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분리되어 배출될 뿐만 아니라, 정제한 가스를 압축·냉각하여 액화천연가스(LNG)로 만들고 이를 선박으로 운송하여 수요지에서 가스 상태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 에너지를

위해 소비되는 연료에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즉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가스전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대기오염을 야기합니다.

[천연가스 생산, 가공, 소비 과정의 개요 도식]



SK E&S가 수출입 은행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서 연간 350만 톤의 가스를 생산·가공·운송하는 데에 약 39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가스가 소비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더하면, 연간 1,3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소갑 제6호증 의원 보도 자료).

구분	상류	중류			하류
		액화	운송	재기화	
배출량	200만 톤	150만 톤	29만 톤	11만 톤	960만 톤

SK E&S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위 배출 가운데 상류 및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약 210만 톤을 포집하여 인근 해상가스전인 바유-운단(Bayu-Undan) 가스전에 저장하겠다는 계획{이를 위하여 사

용되는 기술이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³입니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SK E&S는 CCS로 직접 포집·저장하지 못한 이산화탄소 분량에 대하여는 호주 다른 CCS 사업을 통해 확보한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하겠다고 언론보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업의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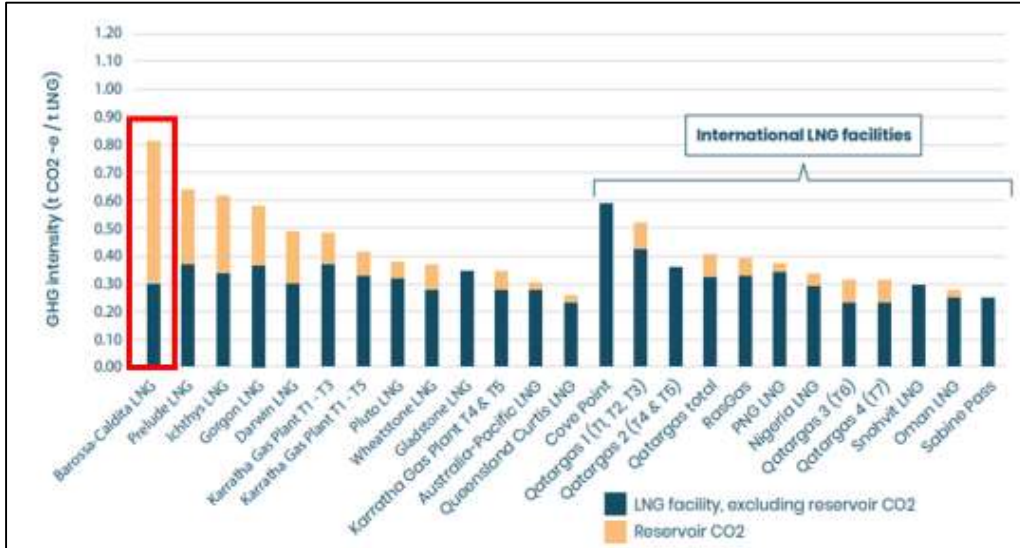
SK E&S는 CCS 기술이 상용화된 것처럼 묘사하지만, CCS 기술은 기술적·재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이에 관하여는 후술합니다). 무엇보다 CCS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필연적으로 대기오염을 야기합니다.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바로사 가스전은 다른 가스전에 비해 높은 비중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도, 바로사 가스전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18%에 달하여 호주 내 다른 가스전 대비 2배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처리 설비 운전을 위해 연소되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더해지면 이 사건 사업은 연간 37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해마다 5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료 삽입을 위한 여백]

³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뒤 지층 깊숙이 주입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타 가스전 대비 바로사-칼디타 가스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IEEFA, 2021)]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생산되는 LNG가 소비되면서 발생할 약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연간 1,5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2,000MW급 초대형석탄화력발전소의 연간 배출량보다도 많은 수준이며,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간인 2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 전체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막대한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CCS 기술 적용 자체로 막대한 전력 및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CCS를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 만큼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예측됩니다. 특히 IEEFA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8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거쳐 포집과 저장이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이산화탄소 분리와 포집,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한 압축기 가동, 이산화탄소 액화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이산화탄소 감축 및 포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3) 호주 내 현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반발

또한 호주 내 현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 사업은 가스전 부지를 포함하여 육상의 터미널을 연결하는 26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위 파이프라인은 호주의 멸종위기종인 올리브 리들리 바다거북(Olive Ridley Sea Turtle)과 납작등 바다거북(Flatback Sea Turtle)의 서식지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시 호주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전의 파이프라인은 호주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2개의 주요 어장을 침해하며, 이는 호주 어민들의 어업권과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호주 내 현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는 2021. 12. 8. 피신청인들에 직접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자체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이외에 이 사건 사업은 선행되어야 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유사 사업에의 금융지원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과 유럽투자은행(EIB) 등을 포함한 39개 주요 국가 및 기관들이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성명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1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는 친환경 사업만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일이 무색하게 이 사건 금융지원 등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제도정책적 문제점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구비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SK E&S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불과 6km에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티위섬 원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2 및 채권자3도 SK E&S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산토스사(社)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듣기는 커녕, 가스관의 위험요소와 환경오염 발생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소갑 제7호증의 1 채권자2의 진술서 및 그 번역문, 소갑 제7호증의 2 채권자3의 진술서 및 그 번역문). 이는 ‘UN 원주민 권리 선언’에 위배되어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연방 해상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규정(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Environment) Regulations)’에서는 환경계획의 제출 및 승인을 요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데(Part 2—Environment plans, Division 2.2A—Consultation in preparing an environment plan), 티위섬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소갑 제8호증 호주의 연방 해상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규정 중 Division 2.2A(본문 기재 쪽 번호 기준 21쪽)}.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채택한 국제 환경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공사(IFC)의 환경·사회적 성과표준 7(Performance Standard 7, 선주민 존중)과 적도원칙(EP, Equator Principles)의 원칙5(이해관계자 관련 항목)의 위배 소지 또한 있다고 할 것이므로, 투자계약 체결에는 재고가 필요합니다{소갑 제9호증 IFC의 환경·사회적 성과표준(41쪽), 소갑 제10호증 적도원칙(본문 기재 쪽 번호 기준 11쪽)}.

또한 이 사건 사업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 경계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국제 법률 분쟁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사 가스전은 인도네시아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해당 대륙붕은 현재 상황으로는 호주의 관할 내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여전히 1997년에 EEZ와 해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합의한 ‘퍼스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해상 경계 확정을 위한 두 국가간의 논의가 2019년에 다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퍼스 조약’에 따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상황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SK E&S로서는 새로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협의가 불발될 경우 채무자들의 이 사건 금융지원 등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제도정책적으로도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국제적인 분쟁에 정부 차원의 공적자금까지 투입을 불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융지원 등은 부적절함이 자명합니다.

마.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재무적 부당성

1) 이 사건 사업의 불확실성 및 비경제성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97개국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를 2° C 보다 현저히 낮은 1.5° C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지구적인 평균 기온은 1.2° C 상승하여,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탄소 예산이 7년 내에 모두 소진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천연가스, 석유를 포함해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IEA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수요는 2050년까지 최소 현재 대비 55%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사건 금융지원 등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 투자가 기업의 입장에서조차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SK E&S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관련 회사들은 CCS 기술을 이용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마치 탄소 중립에의 세계적 추세(화석연료 감축)와는 무관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채무자들과 같은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CCS 기술은 불확실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 역시 현저히 떨어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즉 채무자들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큰 CCS 프로젝트인 고르곤 CCS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를 포집하는 것을 목적하였으나, 한화 2조 6,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기술적인 한계로 계획량의 30%만을 포집하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 위 고르곤 CC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세브론사(社)는 규제당국으로부터 벌칙(Penalty)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CCS 기술에는 기술적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바로사 가스전의 CCS 사업 추진에 최소 1조 8,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사 가스전의 사업비용이었던 4조 원의 절반에 달합니다(소갑 제11호증 이 사건 사업의 추가 비용 관련 기사). 이와 함께 SK E&S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선박으로 운송하여 호주 폐가스전에 저장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SK E&S의 해당 계획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목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장거리 수송을 전제로 하는 CCS 사업이 추진된 선례가 없습니다.

나아가 SK E&S를 비롯하여 SK E&S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산토스사(社)는 CCS를 포함한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경험이 일절 없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CCS 기술의 기술적 한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역시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산토스사(社)는 2021. 12. 기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16개의 주요 인·허가 절차 중 3건만을 승인받았을 뿐으로, 나머지 13개의 승인절차를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에의 공적자금 투입은 재무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공적자금의 재원을 납부하는 납세자인 채권자1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도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2) 방론: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적 지원

이러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들의 경영진이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을 고집하는 것은 국책기관이자 정부자금으로 조성된 채무자들의 기본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 타당성이나 근거 없이 무리하게 특정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적 지원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바. 소결

이처럼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은 환경적, 제도정책적, 재무적 측면에서 각 중대한 문제점을 가진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공적자금을 투입

하여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3.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환경권에 기한 건강권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1) 관련 법령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가는 각종 개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정신을 구체화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의 향유 뿐 아니라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국가 및 환경관련 사업의 시행자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국가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환경정책기본법 제8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국가가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구, 시행하여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국가간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제9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은 각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출연한 금원을 통하여 무역 기타 대외거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거나(무역보험법 제1조), 국가의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등(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그 설립목적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운영사항, 내부기관 내지 규약을 구성함에 있어 관할 정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⁴ 각종 벌칙규정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등(무역보험법 제52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7조) 내부기관의 구성, 재정의 유지 등 실질에서 볼 때 그 설립목적행위로서 국책자금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입니다(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9 결정의 판시사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들은 환경권의 이념과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도구를 이용하고, 적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⁴ 무역보험법 제4조, 제8조, 제34조, 제39조 제2항, 제40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33조 내지 제41조 등

그런데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이 실행되어 가스전 개발이 계속될 경우, 대기오염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인근 주민인 채권자2 내지 4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간접적인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헌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⁵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제1항) 역시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 각 권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인간의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외국인인 사실이 위 권리의 주장에 방해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구체화된 법률규정이 있거나, 혹은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그런데 대기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요소(예컨대 소음, 습지 보호, 일조권 등)와 달리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불가결한 필수재라는 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시키는 자에게(대상) 이러한 오염의 피해를 받는 자(주체)가 그 금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내용 및 행사방법), 당연히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가스전 사업의 경우 그 규모상 대규모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무역보험 제공 등 수출신용 공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즉 이 사건 금융제공 등 없이는 이 사건

⁵ 건강권의 헌법상 근거규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3권 제4호, 89-131면 참조

가스전의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환경권 침해의 인과관계 역시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한편 채권자2 내지 4의 경우,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될 바로사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SK E&S의 가스전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다량 유출이 되는 등으로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전이 설립되어 발생하는 오염 역시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므로, 채권자2 내지 4의 점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제217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가스전 설립의 구성행위로서 이 사건 금융제공 등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

1) 관련 법령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

정부 출연금으로 그 운용자산이 이루어진 채무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위 ‘기금을 집행하는 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속하게 되며, 특히 채무자1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으

로서 조성된 무역보험기금을 기반으로 제반 금융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주체입니다(무역보험법 제30조 내지 제36조).

2) 이 사건의 경우

전술하였듯 채무자들의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은 제도정책적, 채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향후 SK E&S의 채무불이행 시 피제공금융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

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및 이 사건 사업의 불가역성(不可逆性)

이 사건 금융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채권자들은 회복·전보할 수 없는 생존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를 현 시점에서 가처분으로 다투어야 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가스전 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및 성질상 일단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이 이루어지거나 착공이 된 후에는 각 당사자의 손해발생이 너무 커지므로 이를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미 투입된 비용이나 다른 금융기관, 호주 정부 또는 대상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스전의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이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 시점(이 사건 금융제공 등 시행시점)이야말로 각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이 아닌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서 다투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 소송의 목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가처분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특수성(사전에방적 조치의 효율성)

위 3.항에서 전술하였듯 채무자들은 환경권의 이념과 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이용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데, 환경이 파괴된 후에는 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사후적인 치유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보다 효율적입니다(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9 결정).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금융계약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가스전 개발 계약의 특성상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달리 금융제공 시점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바, 위와 같이 사전예방적 판단을 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5. 결론

오염물질의 생산을 지원하여 인간의 중요한 가치인 건강권 등을 위협하는 외에도, 사업적으로 채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이 사건 금융제공 등에 채권자 1을 비롯한 국민들의 납세 재원을 이용하는 일은 실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가스전 개발사업 특성상 금융제공(Financing)은 가장 중요한 사업요소로서, 일단 금융제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상 사업 중단이나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후적으로도 그 취소 등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에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금융제공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사전적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앞다투어 바로사 가스전의 환경오염 야기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정부 차원의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면서 사실상 대기오염을 타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을 받아 이 사건 가스전의 개발이 착공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문에 채권자들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국 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채권자들의 환경권에 기한 건강권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각 보전하기 위하여 국책기관인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금융제공 등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이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4 | 채권자들의 각 신분증 사본 |
| 1. 소갑 제2호증의 1 |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 소갑 제2호증의 2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 1. 소갑 제3호증의 1 | 한국수출입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 소갑 제3호증의 2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 1. 소갑 제4호증의 1 내지 2 | SK E&S의 보도자료 |
| 1. 소갑 제5호증의 1 | 한겨레 뉴스 기사 |
| 1. 소갑 제5호증의 2 | 바로사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채무자2의 회신 |
| 1. 소갑 제6호증 | 의원 보도 자료 |
| 1. 소갑 제7호증의 1 | 채권자2의 진술서 및 그 번역문 |
| 1. 소갑 제7호증의 2 | 채권자3의 진술서 및 그 번역문 |
| 1. 소갑 제8호증 | 호주의 연방 해상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규정 |
| 1. 소갑 제9호증 | IFC의 환경·사회적 성과표준 |
| 1. 소갑 제10호증 | 적도원칙 |
| 1. 소갑 제11호증 | 이 사건 사업의 추가 비용 관련 기사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1. 소송위임장 | 1통 |
| 1. 담당변호사 지정서 | 1통 |
| 1. 송달료 납부서 | 1통 |

2022. 3. 23.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 정 립

담당변호사 김 도 현

담당변호사 안 수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별지1]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의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 투자의 자금공급을 위한 무역보험 체결 등 무역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행위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부수하는 업무. 끝.

[별지2]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의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주선행위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부수하는 업무. 끝.